의 안 번 호	제98호
의결 연월일	2020. 9. 2.

- 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--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8월 25일 차경선 의원 외 4명

나. 회 부 일 자: 2020년 8월 25일

다. 상 정 일 자: 2020년 9월 02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 설명자 : 차경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O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O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, 교육, 홍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6조)
- O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~제8조)

- O 지도·감독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0조)
- O 시행규칙(안 제11조)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5. 토론 요지 : 생 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